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243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4. 13.
판 결 선 고	2017.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3.[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9,515,6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14,212,020원, 농어촌특별세 2,756,0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2014. 6.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4(납세고지서)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가. 원고는 2012. 12. 14. [redacted] [redacted]구 B 토지 387.5㎡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6. 18. 집합건축물로 구분전환되었다)을 무상증여받아 취득하고, 2013. 1. 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일부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한 다음 2013. 1. 21. 이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19,515,650원, 지방교육세 14,212,020원, 농어촌특별세 2,756,0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10. 3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보건소장(이하 [redacted]구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에 약국이 개설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지연·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redacted]구 보건소장과의 협의 및 보건복지부에의 민원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지 못한 채 부득이하게 1년의 유예기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이 경과하게 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비영리단체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부터 5층까지는 의료기관인 'C의원(진료과목: 정형외과, 원장: D)'이, 나머지 1층 일부에서는 약국과 만화방이 각 운영되고 있었다.

② 원고는 2012. 12. 14.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당시 대표자는 D의 배우자인 E였고, D의 소유로 보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의료장비 등을 법인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다. 한편 의료법인 허가조건의 하나로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후 법인 목적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다), 2013. 1. 2. 설립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3. 1.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영업장소로 하여 사업자 신규등록(대표자 E)을 한 다음, 2013. 1.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③ 원고는 [redacted]구 보건소장과 사이에 원고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redacted]구 보건소장은 이 사건 건물이 '1개의 건물을 1개의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일부 구역에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④ 원고는 2013. 2. 3.부터 2013. 9. 16.까지 7회에 걸쳐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질의민원을 하였고,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담합 목적이 아니고, 약국과 의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기관의 구분이 가능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⑤ [redacted]구 보건소장은 2014. 4. 11. 원고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 사전 검토결과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7항,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대책(보건복지부, 2001. 8. 6.), 의약분업 종합편람(보건복지부, 2000년) 규정에 의하면 '1개의 건물을 1개의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일부 구역에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내약국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공문[2]을 발송하였다.

⑥ 이 사건 건물은 2014. 6. 18.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구분전환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2호 부분은 2014. 5. 15. 매매를 원인으로 2014. 9. 5. 주식회사 룡플란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⑦ 원고는 2014. 8. 6. [redacted]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4층 및 5층 일부에 관하여 'F한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6, 을 1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검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제목은 '의료기관개설허가 불가 및 허가신청 반려 사유 요청에 따른 답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실제로 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 접수 및 그에 따른 반려처분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 우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은 그곳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에 약국이, 나머지 층에 C의원이 운영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법인 기본재산(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출연자인 D과 취득 당시 원고 법인 대표자 E의 관계, 이 사건 건물 소재 C의원(D은 약 25년 전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원고의 취득 당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및 약국의 운영현황(1개의 의료기관과 1개의 약국이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의사법 등 관련규정상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자이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는 데에 별다른 공법상의 제한이 없을 것으로 막연히 추측하거나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전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따르는 공법상의 제한 및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인허가 관련 사항을 행정관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구체적인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만연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법령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그와 같은 법령상 장애를 해소하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정식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4. 4. 11. [redacted]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 거부처분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정식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의 [redacted]구 보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은 원고가 [redacted]구 보건소장에게 정식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반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일 뿐이다.

② [redacted]구 보건소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혔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redacted]구 보건소장이 근거로 든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대책 및 의약분업 종합편람의 규정(1개의 건물을 1개의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일부 구역에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내약국에 해당)은 의사법이나 약사법 등 상위법규의 위임이 없어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7항 또는 구 약사법(2014. 3. 18. 법률 제1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5항이 정한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개별적·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③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이 단순히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그치지 않고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불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으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로, 원고로서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허가신청을 한 후 불허가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는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행정청과 비공식적인 의사협의만을 지속하였을 뿐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조차 제출한 사실이 없고, 7개월간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행정청의 귀책사유가 다소 가미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취득 당시와 동일한 사유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령상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원고가 민원제기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법령상의 장애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인 2014. 5. 15. 이 사건 건물 중 제101호, 제102호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취득세 등의 추징을 최소화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14. 8. 6.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일부분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권주연

판사 김달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 구 약사법(2014. 3. 18. 법률 제1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